

#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

의안 번호	2224
----------	------

2024년 12월 1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허훈 의원 (찬성자 26명)

나. 제안일 : 2024년 10월 16일

다. 회부일 : 2024년 10월 18일

라. 상정일 : 제327회 서울시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년 12월 17일 상정·의결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허훈 의원)

#### 가. 제안이유

-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도시화를 이룬 서울의 도시화 경험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국제개발 협력 이행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또한, 최근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제개발 관련 업무 범위를 키워 나가고 있음
- 이에,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서울의 도시 개발 및 운영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 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를 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 설정 및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7조).
- 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 가. 조례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달라진 서울시의 위상에 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제정조례안은 총 10개의 조항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안 제1조~제3조)은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본칙에 해당하는 부분(안 제4조~10조)은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대상지역과 사업의 범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며,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부칙으로 함

### < 이번 제정 조례안의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
제2조(정의)	“민간부문”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용어를 정의함
제3조(시장의 책무)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 향상을 책무로 규정함
제4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
제5조(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	국제개발협력의 대상지역을 규정함
제6조(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제7조(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
제8조(사무의 위탁)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위탁과 경비 지원이 가능함
제9조(지원)	민간부문 등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함
부 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종전 규정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 및 협약의 경과조치

## 나. 검토 내용

### “입법취지 및 필요성”

- 이번 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이하,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에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한 공공외교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국제개발협력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는 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달라진 서울시(이하, ‘시’)의 위상에 맞게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7호<sup>1)</sup>에서 “국제교류 및 협력”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제개발협력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시행 중임
- 일례로, 경기도는 국제개발협력과 국제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각각 제정·시행 중이며, 부산광역시는 국제교류협력 관련 조례(「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3.3.1. 제정)하였음

---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국제교류협력 증진 조례’)」가 제정(2014.5.14. 제정)되던 시기에 이미 「국제개발협력법」이 제정(2010.7.26. 제정)되어 시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국제교류협력 증진 조례」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은 시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보다는 해외도시와의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시는 최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발굴·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협력대상국 기준) 도시를 대상으로 ODA 공모사업(‘서울 ODA 챌린지’)을 실시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바, 이번 제정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Top 5’ 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달라진 위상에 맞는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및 국제교류협력 관련 조례 현황 〉

구분	국제개발협력	국제교류협력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2014.5.14. 제정)	
경기도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2014.1.10. 제정)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2020.12.31. 제정)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2021.11.2. 제정)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2023.3.1., 제정)	부산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1994.9.26., 제정)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2015.8.12., 전부개정)

## “주요 조문별 검토”

### ① 목적(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것으로, 「국제개발협력법」 제4조와 제5조<sup>2)</sup>에서 각각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과 국가등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제정조례안은 이에 따라 시의 국제개발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밝힘으로써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음

### ②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부문”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2조는 “민간부문”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정의규정은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조례를 집행하려는 것인 바, 안 제2조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해 둠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이번 제정조례안의 용어는 「국제개발협력법」 제2조(정의)<sup>3)</sup>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나, 해당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였음
- 「국제개발협력법」에서는 “민간단체”를 협력 및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외교법」 제2조(정의)<sup>4)</sup> 협력 및 지원대상으로서의 “민간부문”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용어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음. 이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된 “민간단체”와 “민간부문”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정의규정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5.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이란 이자율·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 4) 「공공외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 이번 제정조례안에서는 “민간부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으로 정의하여 협력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③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이번 제정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국가등의 책무를 규정한 「국제개발협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sup>5)</sup>을 준용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안 제3조제2항은 「국제개발협력법」 제5조제3항을 준용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사업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성을 규정한 조항의 항목수가 많고 강행규정일수록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의 책무규정은 4개~6개의 조항<sup>6)</sup>(붙임 2 참조)으로 이뤄져 있는데 반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책무규정이 2개의 조항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극적인 조례 집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④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제4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 제4조는 시장이 연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전략과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한 바 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정부는 「국제개발협력법」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5년 단위의 종합기본계획과 종합기본계획에 따른 연간 단위의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시행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6)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은 6개 조항으로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4개 조항으로 구성

## ⑤ 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안 제5조)

제5조(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공적개발원조 대상국가
2. 시 국제교류 지역 이외의 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조 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3. 예기치 못한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안 제5조는 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 시 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공적개발원조(ODA) 대상국가 외에 재난재해로 인해 원조가 필요한 지역, 재외동포 거주지역을 추가하는 것은 「국제개발협력법」에서 정한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부합한다 할 수 있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 사례<sup>7)</sup>에 비춰볼 때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 소개<sup>8)</sup>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원조를 지칭할 때 “aid” 대신에 “assist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원조수원국(원조대상국)” 대신에 “협력대상국(partner country)”이

7)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제8조(대상지역) 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도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개발원조 대상국가
2. 도 국제교류 지역 이외의 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조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3.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지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8)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소개 [https://www.mofa.go.kr/www/wpge/m\\_24252/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24252/contents.do)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제개발협력이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동반관계(partnership)에 기초한 상호적인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제2호의 “원조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은 “협력대상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음

- 또한, 안 제5조제1호와 제2호에서 명시한 “시 국제교류 지역”은 「국제교류협력 증진 조례」 제5조(친선결연 등)에 따라 시가 친선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한 해외도시로 상정할 수 있겠으나,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례 조문에서 “시 국제교류 지역”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⑥ 국제개발협력 사업 범위(안 제6조)

**제6조(국제개발협력 사업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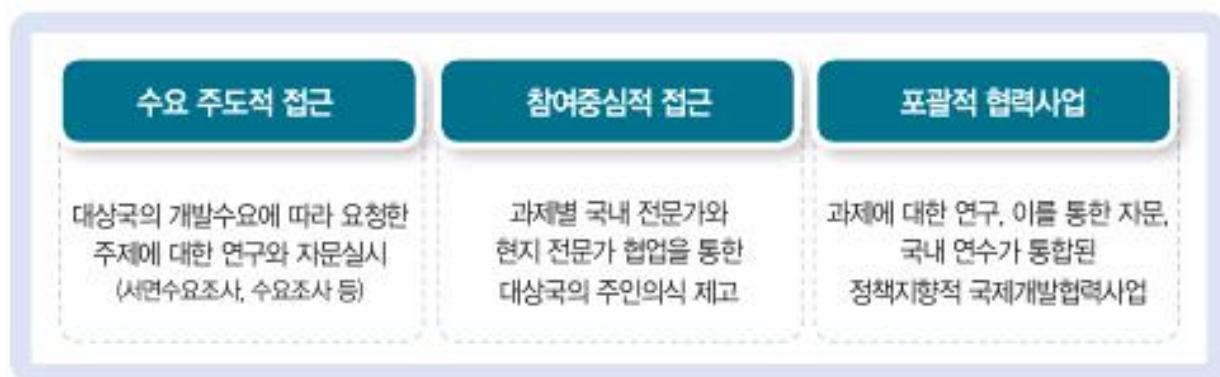
1.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 사업
4.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5. 전문가 파견 및 기술협력 사업
6. 인도적지원
7.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8. 해외도시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장학금 지원을 포함한다)
9. 해외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하는 사업

- 안 제6조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포함하고자 하였음
-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법」에 따라 추

진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기획재정부 훈령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프로그램(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안 제6조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에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외에 경제발전 경험 공유프로그램(KSP) 유형의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경제발전경험 공유프로그램(KSP)에는 국제개발협력 대상국가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정책연구·자문, 공동컨설팅, 역량강화 연수, 사례연구 등이 포함<sup>9)</sup>되며, 해당 유형의 사업 수행을 통해 대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이를 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만, 사업범위에 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모두 포함하고자 함에 따라 각 호의 사업들이 “상호배제적이면서 전체포괄적<sup>10)</sup>”이지 않게 규정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 경제발전경험 공유프로그램(KSP) 사업의 접근 방식 >



출처 : 국제개발협력사업 가이드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9) 기획재정부 KSP 누리집 <https://www.ksp.go.kr/pageView/organization>

10) - 상호배제적이지만 모였을 때 전체를 망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자 논리(MECE: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제6조제1호의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제2호의 개발컨설팅, 제5호의 전문가 파견 및 기술협력 추진이 가능하므로 각 호의 사업 성격이 상호배제적이지 못하다 할 수 있음

## ⑦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안 제7조)

**제7조(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국제개발협력에 기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5.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7조는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교류협력 증진 조례」 제15조(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sup>11)</sup>에 준하여 작성되었으며, 안 제7조제4호에 국제개발협력에 기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을 추가하였음
-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협력대상국에 대한 원조를 통해 대상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시민 홍보를 추가하고자 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 ⑧ 사무의 위탁(안 제8조)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11)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 시장은 국제기구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안 제8조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위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sup>12)</sup>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조건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 경험 보유” 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가능”을 명시하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⑨ 지원(안 제9조)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부문 등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안 제9조제1항은 민간부문 등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민간부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원활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함

---

12)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 제9조제2항은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안 제9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국제개발협력기금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sup>13)</sup>에 따르면 기금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에 활용될 수 있음
- 이번 제정조례안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국제개발협력기금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사업 추진 및 기금의 활용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하겠음

## ⑩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10조는 국제개발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 주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협력대상국은 물론 외교부(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산업자원통상부(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KEXIM)),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바, 원활한 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13)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해외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도시외교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무상 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는 바, '글로벌 Top 5' 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달라진 위상에 맞는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총칙(안 제1조~제3조)의 안 제3조에서 제정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나, 책무성을 규정한 조항의 항목 수가 많고 강행규정일수록 강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시장의 책무 조항을 보다 구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칙(안 제4조~제10조)의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연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명시하였음. 「국제개발협력법」에서 5년 단위의 종합기본계획과 연간 단위의 종합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안 제5조에서 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을 명시한 것은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과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타당해 보임. 다만, 최근의 국제개발협력 기조에 따라 안 제5조제2호의

“원조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은 “협력대상국”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해석과 적용시 발생 가능한 의문점을 없애기 위해서 조문의 “시 국제교류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에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기에 각 호의 사업들이 체계적이지 않게 나열되어 있는 바, 향후 이를 상호배제 적이면서 전체포괄적으로 구성·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안 제7조~제10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안 제7조), 사무의 위탁(안 제8조), 민간부문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9조), 국제 개발협력 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제정 조례안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조문의 내용 또한 무리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0.7월 「국제개발협력법」이 제정·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은 것은 시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보다는 해외도시와의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도시외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번 제정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시의 위상 제고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이번 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후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의 심의를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제 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부문”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공적개발원조 대상국가
2. 시 국제교류 지역 이외의 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 위원회(DAC) 원조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3. 예기치 못한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 사업
4.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5. 전문가 파견 및 기술협력 사업
6. 인도적지원
7.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8. 해외도시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장학금 지원을 포함한다)
9. 해외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국제개발협력에 기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5.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부문 등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 불임2 주요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 관련 조례의 ‘책무규정’

###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 제7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기도 국제협력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 ③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 ④ 도지사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 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⑤ 도지사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⑥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개발 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관련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24
----------	------

발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의자: 허훈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김경훈,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춘선,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원형, 이은림,  
임종국, 장태용, 최진혁,  
홍국표, 황철규 의원(26명)

## 1. 제안이유

-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도시화를 이룬 서울의 도시화 경험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국제 개발협력 이행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또한, 최근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제 개발 관련 업무 범위를 키워 나가고 있음
- 이에,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서울의 도시 개발 및 운영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를 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 설정 및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7조).

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제 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부문”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관련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공적개발원조 대상국가

2. 시 국제교류 지역 이외의 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조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3. 예기치 못한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 사업
4.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5. 전문가 파견 및 기술협력 사업
6. 인도적지원
7.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8. 해외도시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장학금 지원을 포함한다)
9. 해외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국제개발협력에 기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5.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부문 등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3조(시장의 책무), 제6조(국제개발협력 사업 범위), 제7조(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및 제9조(지원)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경제정책실)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3조, 제6조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붙임1)	289,200
제7조	국제개발협력지역 교류협력행사(붙임2)	183,000
제9조	국제개발협력 전담조직 운영(붙임3)	1,716,499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현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 [붙임 1] 2024년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 해외도시 및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대상 정책공유

- 도시 간 교류를 위한 정책발표, 사업발굴 및 추진 시 관련분야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 및 현장 시찰 지원,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 공동 모색, 다자개발기구 연차 총회 등 해외 개최 정책공유 행사 참가를 통한 서울시 정책 홍보 및 해외 네트워크 기반 강화
- 해외도시 및 다자개발기구와의 MOU 체결을 통한 사업 추진 기반 마련(협력MOU 체결식 및 정책공유 세미나 개최로 도시 간 도시정보 및 정책공유, 공동협력을 위한 액션플랜 마련, 관련분야 후속 사업 발굴 논의 추진)

#### ○ 국제개발협력 사업 홍보 콘텐츠 제작

- 국제개발협력 사업 홍보 콘텐츠 제작(영상, 브로슈어)을 통한 사업 기반 강화

#### ○ 민관협력 포럼 개최

- 서울시정 가치를 공유하는 ODA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 ○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쉽 현지 워크숍

-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및 해외도시 관계자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 파악 등 효율적 사업 수행 추진

[붙임 2] 2024년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지역 교류협력행사 사업설명서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의 주요내용
  - 친선우호도시 기념 행사 개최
  - 지역별 교류협력 행사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 [붙임 3] 2024년 국제개발협력 전담조직 운영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 국제개발협력 전담조직 운영

- 조직명 :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
- 조직형태 : 1단 1부 8명 (정원 12/현원 8)
- 역 할 : 사업정보 수집, 기획 및 제안, 사업수주, 민간과 공동 사업 수행 등
- 운영 : 공공위탁(서울주택도시공사)

##### ○ 2024년도 사업계획

-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통한 서울 위상 제고 및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22~25)
  - 에콰도르 과야킬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22~24)
  - 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22~24))
  - 필리핀 마카티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 구축사업 PMC 용역(23~25)
  - 캄보디아 프놈펜 기후변화대응 관련 시민교육 및 폐기물처리 역량강화(24~26)
  -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스마트시티 조직 및 기술강화를 위한 개발전략개선 지원(개발중)
  - 세계은행 신탁기금 사업(개발중)
  - 키즈기즈스탄, 인도, 페루,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대상 자체발굴사업(개발중)
- 해외도시 공무원,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대상 서울시 정책 공유
- 국제개발협력 자문단 운영(14인)